

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4.04. 개정 2024.08.08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혜전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)

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.<개정 2012.12.13., 2013.03.27.>

제3조 (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<개정 2019.04.17., 2022.04.04.>
-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제4조 (임기)

이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 소집)

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6조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 (관계자의 회의참석)

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 내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 (회의록)

-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- ② 간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 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총장이 교원을 임용(재임용, 승진임용 포함)또는 전보를 제청하고자 할 때 이의 동의에 관한 사항
-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교원의 임명제청을 동의함에 있어 본교 교원인사 규정을 참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8.0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.